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(이하 “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
2.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3.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
③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,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 법 제7조제4항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4와 같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,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징수”를 “징수, 감면, 면제”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5조의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.
- 다.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,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.
- 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, 지정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3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
 - 2) 중소기업 기술진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2호	시정명령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
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 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		
	사업장 주소 (전화번호 :)			
신청 내용	신청사항 ☐ 신규지정 신청 ☐ 자격 확인을 위한 재신청			
	신청사유			

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,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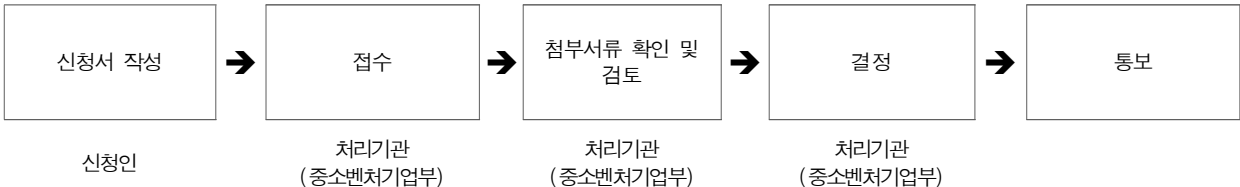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귀하

첨부서류	1. 중소기업 기술혁신진흥 업무계획서 2. 법인 정관 3.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. 중소기업 기술혁신진흥 업무 수행 공간 및 조직·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(이하 “기술진흥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.	제5조(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(이하 “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</u> <u>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</u>	<u><삭 제></u>
<u><신 설></u>	② 제1항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(이하 “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기

<신 설>

② (생 략)

<신 설>

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

2.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
3.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
③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5조의2(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 법 제7조제4항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4와 같다.

<u>제5조의2</u> (생략) 제19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소기업부 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. 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<u>징수</u>에 관한 업무 2. 3. (생략) ② ③ (생략)	<u>② 중소기업부 장관은 법 제7조제4항,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u> <u>제5조의3</u> (현행 제5조의2와 같음) 제19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 <u>징수, 감면, 면제</u>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③ (현행과 같음)
--	--